

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최근 행정환경은 대규모·복합 사업의 증가, 계약 및 재정 집행의 전문화,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규제 적용의 경계 영역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담당

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, 판단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구조는 행정의 지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-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하여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, 감사기구가 사전에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 운영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이에 본 제정안은 사전컨설팅의 대상기관, 대상업무, 신청 절차, 처리 기한, 결과 통보, 이행관리 및 효력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,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, 사전컨설팅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

- 둘째, 감사대상기관의 신청 절차와 자체감사기구 검토 절차,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 등으로의 이송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의 운영체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.

- 셋째,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넷째, 사전컨설팅 결과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, 그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다섯째,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관련 법령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, 감사가 단순한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의 기능을 넘어 행정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예방적 감사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아울러 공무원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되어,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.
-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.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